

#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2024.01.01. 기준

## 1. 계약목적

센터와 이용자(보호자)가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, 급여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계약기간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내외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.
- 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## 3. 급여계약

-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  1. 계약 당사자
  2. 계약기간
 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, 본인 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 한다.

## 4.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

-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부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|
|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<br>보험료 순위25% 초과 보험료순의 50%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   |
|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(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)<br>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)<br>보험료 순위가 0~25%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| 6%   |

1) 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)에 따른다.

2) 월 이용료

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지원등급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
| 등급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'23년<br>수가 | '23년<br>본인부담 | '24년<br>수가 | '24년<br>본인부담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3시간 이상<br>~ 6시간 미만   | 1등급    | 38,630     | 5,795        | 39,810     | 5,972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35,760     | 5,364        | 36,850     | 5,528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33,010     | 4,952        | 34,020     | 5,103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31,510     | 4,727        | 32,470     | 4,871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30,000     | 4,500        | 30,920     | 4,638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30,000     | 4,500        | 30,920     | 4,638        |
| 6시간 이상<br>~ 8시간 미만   | 1등급    | 51,780     | 7,767        | 53,360     | 8,004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47,960     | 7,194        | 49,420     | 7,413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44,270     | 6,641        | 45,620     | 6,843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42,770     | 6,416        | 44,070     | 6,611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41,240     | 6,186        | 42,500     | 6,375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41,240     | 6,186        | 42,500     | 6,375        |
| 8시간 이상<br>~ 10시간 미만  | 1등급    | 64,400     | 9,660        | 66,360     | 9,954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59,660     | 8,949        | 61,480     | 9,222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55,080     | 8,262        | 56,760     | 8,514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53,580     | 8,037        | 55,210     | 8,282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52,050     | 7,808        | 53,640     | 8,046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2,050     | 7,808        | 53,640     | 8,046        |
| 10시간 이상<br>~ 13시간 이하 | 1등급    | 70,950     | 10,643       | 73,110     | 10,967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65,720     | 9,858        | 67,720     | 10,158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60,720     | 9,108        | 62,570     | 9,386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59,190     | 8,879        | 61,000     | 9,150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57,690     | 8,654        | 59,450     | 8,918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2,050     | 7,808        | 53,640     | 8,046        |
| 13시간 초과              | 1등급    | 76,080     | 11,412       | 78,400     | 11,760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70,480     | 10,572       | 72,630     | 10,895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65,110     | 9,767        | 67,100     | 10,065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63,600     | 9,540        | 65,540     | 9,831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62,100     | 9,315        | 63,990     | 9,599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2,050     | 7,808        | 53,640     | 8,046        |

| 이용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| 1일급여수가 | 비급여여식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부담금<br>비율 | 월급여수가   | 본인부담총액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8시간 이상<br>~<br>10시간 미만                 | 1등급 | 66,360 | 110,000<br><br>(식대:<br>2,500×2식×20일<br>간식비:<br>10,000) | 15%         | 199,080 | 309,08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          | 119,448 | 229,448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%          | 79,632  | 189,63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| 61,48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  | 184,440 | 294,44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          | 110,664 | 220,664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%          | 73,776  | 183,776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| 56,76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  | 170,280 | 280,28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          | 102,168 | 212,168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%          | 68,112  | 178,11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| 55,21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  | 165,630 | 275,63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          | 99,370  | 209,37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%          | 66,250  | 176,25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| 53,64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  | 160,920 | 270,92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          | 96,550  | 206,55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%          | 64,360  | 174,360 |
| * 본인부담금 표시된 금액은 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용 기준임.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
## 5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-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-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
-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(급여비용수가, 비급여항목 및 비용 등)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## 6. 이용료 납부

-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-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
## 7.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-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## 8.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

-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-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## 9. 계약해제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.
-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 -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 -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 - 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 - 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 - 6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